

“우월한 지위가 공정성 해칠 수도... 현장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돼야”

글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comixpark@gmail.com)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예술인은 유형,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위 인용문은 ‘예술인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조항의 내용이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다. 조항을 보면,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가 포함된다. 그러니 예술인을 만화가로 바꿔 읽어도 좋다.

두 번 다 몹시 추운 날씨였다. 작가와 독자들은 레진 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의 강남 사옥 앞에 모였다.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었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요구도 아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실력보다 과한 대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인용한 법조항처럼 “정당한 존중”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말라

는 주장을 할 뿐이었다. 언제라도 레진에서 성실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예전의 과오를 사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고 실천했다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작가들의 주장에 대한 레진의 대응은 달랐다. 대형 법무법인을 내세워 은송, 미치 작가에게 손해배상액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레진 사태 왜 일어났나

2013년 7월 레진이 유료 웹툰 플랫폼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작가들을 찾아다니며 참여를 부탁했다. 작가들은 웹툰 생태계가 좀 더 다양해지기를 바라며 레진에 작품을 연재했다. 독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레진에 연재되는 작품을 구독했다. 만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레진은 특별했다. 돈을 벌려는 회사이니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들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레진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레진의 캐릭터 ‘돈독’에 대해 이름의 의미가 “돈독한 관계, 돈독 오른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사업에서 돈독한 관계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지는 않는데, 남은 건 돈독 오른 모습들 뿐이다.

2013년 하반기에 시작한 레진은 2014년 들어 그



웹툰 작가들이 레진코믹스에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출처: 한국웹툰작가협회]

야말로 판을 바꿨다. 완결작 유료화나 미리보기 같은 웹툰의 유료화 모델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먼저 선보였지만, 포털에 기대지 않고 유료 플랫폼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은 없었다. 레진이 판을 바꾼 뒤 한국 웹툰 시장은 급격히 팽창했다. 레진에 작품을 연재한 작가와 레진에 연재된 웹툰을 구독한 독자들은 당연히 함께 판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돈독한 관계에 자꾸 엇박자가 났다. 2015년 여름 레진은 수익 배분 기준을 바꿨다. 약 5대 5였던 수익배분 기준을 7대 3으로 수정했다. 지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마감에 늦는 작가의 총 수익에서 일정 퍼센트를 제하는 ‘지각비’ 조항도 신설했다.

계약조건이 나쁜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 계약조건이 과연 양자 간에 있어 공정한가? 양자에게 모두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됐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한 까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



네이버 웹툰 [출처: 네이버]

해서는 정부는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작가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을 인용하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사회 환경과 함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작가는 성과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돼야 하고, 창작물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

작가들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활용하려는 개인 혹은 회사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위임한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의 권리는 그것을 만든 창작자에게 속한다. 창작물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기여했다면, 저작물의 권리를 나눠 갖는다. 웹툰의 경우 에이전시나 플랫폼, 매체가 작가에게 허락을 받는 건 사용권이다. 경우에 따라 저작물의 권리를 양도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서면계약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문화, 예술 관련 모든 계약에서 서면계약체결이 의무화돼 있다.

‘선 배분, 후 차감’에 숨은 계산

무엇보다 공정한 계약이 중요하다. 2015년 제정

〇〇

우월한 지위가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많다. 창작에 들어가는 여러 활동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일정한 표준단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2017년 발표한 ‘만화, 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조사기간: 2016.5.4~6.30, 모니터링 요원이 작가 직접 방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23.9%에 불과했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33.8%, 표준계약서의 존재를 모른다는 비율도 42.3%에 달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미비한 이유는 표준계약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생태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활용도가 높아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계약서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와 유사한 틀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작가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들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최소수익배분(MG: Minimum Guarantee)의 경우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게임, 영상 등 지적재산권 사용권의 계약조건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금, MG, 수익배분(Running Guarantee)으로 구성된다. MG는 흥행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유통사가 선 지급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을 계약된 비율에 따라 나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MG의 지급방법, MG의 차감방법, 제반비용의 산출 방법 등이다. 레진의 경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익 배분율은 플랫폼 7, 작가 3이고, 주간 마감 월 MG 200만 원 그리고 선 배분, 후 차감으로 정산했다. 이 계약조건에서 악마는 ‘선 배분, 후 차감’이다. 예를 들어 작품의 수익이 300만 원이 발생했다. 작가는 그럼 내가 받은 MG 200만 원을 제하고 100만 원이 수익이니 작가 수익은 30%인 30만 원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플랫폼 수익 70%를 먼저 가져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코인수익 300만 원에서 플랫폼이 70%인 210만 원을 가져간다. 남는 건 90만 원. 미리 지급된 MG가 200만 원이니까 플랫폼은 90만 원도 가져간다. 작가는 30만 원 더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110만 원. 매월 유료수익 670만 원 선까지 작가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작가를 착취하기 위한 숨어있는 악마다. 일반적 방식의 계약은 당연히 선 지급한 MG를 먼저 제하고 수익배분을 한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 숨어 있는 악마의 사례들을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포함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제작돼야 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이것만 해야 한다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 가깝다. 많은 정부 규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해 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최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됐다. 제대로 활용되는 표준계

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규정하고, 다른 항목은 계약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여야 한다.

불공정 행태는 인권의 문제

제대로 활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불공정한 행태들을 바꿀 수 없다. 공정한 창작 생태계는 작가와 플랫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작가와 작가의 관계 혹은 작가와 어시스턴트의 관계이기도 하다. 우월한 지위가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많다. 창작에 들어가는 여러 활동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일정한 표준단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노동 실태 조사를 토대로 표준단가를 만들어 공시한다면, 계약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열정만으로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들을 제어하기가 수월해 진다.

계약을 무시한 연재 중단,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블랙리스트를 통한 특정 작가 배제 등은 계약의 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 공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정상생을 위해 법률, 노무 상담을 해 주거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을 해 주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콘텐츠 창작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법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①